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5. 8. 25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개정(제안) 이유

-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구 조례 내용중 해당 사항을 서울시 준칙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는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지원사업인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중단하고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전환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조항 강화신설(안 제2조)

-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발견시 1시간 초과간주를 4시간 초과 간주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 부과전 자진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 유예기간을 둠
- 노외주차장에서 제2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 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하며 금지수준은 1금지·2금지 또는 3금지인 경우 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 4금지 또는 5금지인 경우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

○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주차거부) 대상 추가 (안 제3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공영주차장 안내표지 설치 규격 등 변경 (안 제10조)

-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정함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중 업무시설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안 제15조)

○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 (안 제25조)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 보조의 방식 변경 (안 제26조)

- 공사후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구청장이 공사대행 방식으로 변경

○ 공사비 반환 신설 (안 제26조)

- 공사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변경, 주차장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 목적과 관련없는 기타 시설 설치시, 단 추차장 조성이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기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 확대 (안 별표 1)

-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을 규정에 의한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추가

□ 관 련 법 규

- 주차장법·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정비요청
[주차계획과-10233호(2004.12.29)] 및 담장허물기사업 확대시행계획
[주차계획과-7107호(2004.9.18)]

□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용산구, 서초구, 관악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2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15일 범위이내의 납부유예기간을 두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2조 제2항 제1호에는

- 주차장내에 부정 주차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던 것을 4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부정 주차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했습니다.

○ 안 제3조 제8호를 신설하여

-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는

- 조 제목을 주차장의 표시에서 주차장의 표지로 정정하고, 주차장 안내표지판도 주차장설치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시민편의 및 주위 경관 등을 고려하여 규격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21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는

- 법개정으로 인하여 자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25조에는

-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 허물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안 제26조에는

- 담장허물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방법을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구청장이 직접 주차장설치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26조의 2에서는

- 주차장설치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 이내 무단 용도변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공사비)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비고 제6호 다목을 신설하여

-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중복된 자구를 간결하게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제2조 제1항 중 「법 제9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삭제하고
- 제4조의 제목중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 제4조 제1항중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삽입하고
- 제5조중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로
- 제6조 제1항 단서에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을 「관리수탁자」로 수정하고
- 주차장 설치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 이내 무단 용도변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 또는 용자금 보조의 반환을 위하여 「제26조의 3(강제징수), 제24조 및 제26조의 2 규정에 의거 용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을 신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 별첨)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 9. 5

보고자 : 이 남 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수 정 의 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주차요금및가산금)①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법 제9조 제2항 및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삭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제8조 제6항에 의한다.		
제4조(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①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